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종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윤종균 · 윤건영 · 모경종
서영석 · 이학영 · 김태년
김우영 · 소병훈 · 이상식
한창민 · 허 영 · 안태준
차지호 의원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무류 · 플라스틱류 · 석탄 · 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인천 구광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.

리튬전지는 가열,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,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
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
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(안 제17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석탄 및 목탄”을 “석탄·목탄 및 리튬전지”로, “저장 및 취급 기준”을 “저장·취급 기준,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의 신고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 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· 플 라스틱류 · <u>석탄 및 목탄</u>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(特殊可燃物)의 <u>저장 및 취급</u> <u>기준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7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석탄 · 목탄 및 리튬전</u> <u>지</u> ----- ----- <u>저장</u> <u>· 취급 기준, 저장 위치 및 현</u> <u>재 수량의 신고 등</u> ----- -----.